

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6 - 제59호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출연월일 2006. 10. 13.

제 출 자 사 천 시 장

1. 의결주문

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공유 재산 대부료를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3조에 근거하여 「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의 규정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(제31조제1호아목 신설)

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발취 : 따로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기획담당관

라. 기 타

1) 신·구 조문대비표 : 따로붙임

2) 입법예고(2006. 8. 23 ~ 9. 13)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

3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31조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아. 「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」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시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5월 10일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) (생 략) 1. (생 략) 가. ~ 사. (생 략)	제31조(-----)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 아. 「 <u>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</u> 」 제2조제5항에 규정된 <u>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</u>

관련법령 발취

【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】

부 칙<04.12.20>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 조례의 개정)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3조의2 중 "외국인투자기업"을 "외국인투자기업 등"으로 하며, 같은조 제1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아.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

【외국인투자촉진법】

제13조 (국·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<개정 2003.12.31>) ①재정경제부장관, 국유재산의 관리청, 지방자치단체의장,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(이하 "정부투자기관"이라 한다)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(지방직영기업을 제외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지방공기업"이라 한다)의 장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·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·공장 그 밖의 재산(이하 "토지등"이라 한다)을 국유재산법·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의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(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"외국인투자기업등"이라 한다)에게 사용·수익 또는 대부(이하 "임대"라 한다)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.
<개정 2003.12.31>

-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03.12.31>

<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>

제19조 (국·공유재산의 임대 등)

- ⑧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, 기술이전,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4.1.13>